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1633 사기방조
피 고 인 최선윤 (600426-1*****), 무직
주거 전남 해남군 ****
등록기준지 전남 해남군 ****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회, 김○현(기소), 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영(국선)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6. 3. 선고 2020고단373, 445(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는 접근매체의 양도가 불법이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속칭 ‘작업대출’이 불가능하며, 제공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일반인에 비해 더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고자 한 이익은 ‘무형적 이익(대환대출)’으로 이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할 충분한 동기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도 작성한 점, 각종매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도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고, 이를 용이하게 할 의사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행위의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형적인 기대 이익에 불과한데,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범죄를 방조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경솔하게 믿고 편법적으로 일명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작업대출을 통하

여서라도 대출을 받고자 하였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에 자신이 돈을 출금하는 것이 작업대출을 위한 것임이 발각되지 않도록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정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의 연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당한 방법이 아닌 ‘작업대출’의 방법으로라도 대출을 받으려 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도 정상적인 대출 실행이라면 필요한 사항들을 굳이 확인하거나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 피고인은 직접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는 등 자신의 신원이나 계좌를 감추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바, 신분노출이나 계좌 거래정지의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직접 이용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피해자 최○숙도 개인 휴대전화로 접촉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안내한 피고인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우○균 명의 계좌로는 2,20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를 당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도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적지 않은 돈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대출절차의 일환으로 돈을 인출하여 돌려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의 학력, 직업, 연령 등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금융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특별히 높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과 행위 태양이 달라 위 처벌전력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호 _____

 판사 김○영 _____

 판사 김○욱 _____